

교육연구팀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단계 BK21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연구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내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4단계 BK21 사업의 관리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2조: (적용기간)

본 규정의 적용기간은 사업협약 기간으로 하며, 협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에 선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연구팀"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구성)

교육연구팀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연구팀장과 팀장 산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교육연구팀장의 역할)

교육연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나. 사업의 총괄 수행
-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라.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팀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가. 교육연구팀 예산 및 결산
 - 나. 내규 제정 및 개정

- 다.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 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교체
- 마. 참여교수 및 학생 실적 평가
- 바. 기타 교육연구팀의 운영 및 주요 사안

제3장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

제7조: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연구팀의 지원을 통해 향후 연구 성과를 도출할 역량이 있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②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다.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③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 ④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인 연구장학금 지원을 받는 자를 뜻한다.
- ②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 지원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선발 우선순위 기준에 있어서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결과에 있어서 1편 이상의 국내 논문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 우선 선출한다.
- ④ 석사 1 학기 또는 석박통합 1 학기 대학원생은 학부성적(평점), 공인영어성적(토플 또는 토익점수 등) 기준으로 선발한다.
- ⑤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논문(50%), 사업참여도(30%), 학과성적(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지원학생과 우수학생평가는 평가와 참여교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9조: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자격 기준)

-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

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은 제외한다.

② 본교 작업치료학과 전임교원인 자로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참여 제한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③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 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교육연구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팀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사업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

① 참여교수 총수는 교육연구팀 선정 당시의 인원인 6인을 기준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으로 필요 시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 가.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이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나.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가 휴직을 하였을 경우
- 다.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가 은퇴를 하였을 경우
- 라. 기타 교체 이유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② 참여교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은 평균하여 1인당 4편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육연구팀장 교체 및 참여교수 변경은 한국연구재단 승인으로 최종 결정되며, 교육연구팀은 승인 요청 이전에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의 사업 자격요건과 연구실적 요건을 포함하는 참여 적격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는 정기 평가를 통해 연 1개 이상의 해외 저널 (SCI, SCIE 급)에 논문을 게재해야 자격이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성과급지급기준(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제11조

①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중 우수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을 지원한다.

②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③ 게재한 논문실적 및 수상실적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④ 교육연구팀에서 설정한 [별표1. 대학원생 업적 평가표], [별표2. 교수 업적 평가표]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제6장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제12조: (신진연구인력 선발 기준)

-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 교수 (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업적과 연구역량, 사업수행에 대한 자질 등을 기준으로 경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13조: (신진연구인력 의무)

- ① 신진연구인력은 4단계 BK21 사업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4단계 BK21 사업수행과 연계된 교육, 연구,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 사업의 연구보고서 작성 등 사업 전반의 수행과정에 참여한다.

제14조: (신진연구인력 지원)

- ① 신진연구인력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교내외 포함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계약 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우수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 · 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지원)

-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 · 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국제화 지원

제16조(지원대상 국제학술대회)

- ①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학술논문 발표를 위해서 다음을 충족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
 - 나. 4개국 이상 참여
 - 다. 구두발표 총 논문이 20건 이상
 - 라.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제17조: (단기해외연수 대상 선발)

- ① 단기해외연수 지원자는 해외연수 대학의 연구협력 교수의 승인서와 연구 성과를 요약하는 이력서를 제출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선발한다.
- ②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제18조: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규정)

- ①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사업팀은 참여대학원생의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외 장기해외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나. 장기해외연수 지원 대상은 참여대학원생 중 학업수행 성적, 연구 성과, 외국어 능력,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 중, 참여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 다. 지원분야는 작업치료학에 관련된 분야로 한하며, 우수한 연구시설과 저명한 학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 라. 운영위원회는 장기 해외연수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하며, 심사 항목은 교육사업팀 연구분야와의 관련성, 연수 기관의 해당분야 연구수준, 사전준비 정도, 계획의 성취가능성, 연수능력이다.
- ② 해외학자 초빙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4조의 3 (해외학자)에 준용한다.

제19조: (국제화경비)

-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외 및 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 나.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 다.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 라.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및 참여교수의 여권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 마. 해외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바.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한다. 다만,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할 수는 없다.
 - 사.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 ③ 해외학자의 초빙 경비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 기준의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나.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라.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가 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바.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장 학술활동지원비 지출 기준

제20조: (국내학술대회 참여 지원)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지도교수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며, 교육연구팀 특성에 부합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참여대학원생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1.

대학원생 업적 평가표

평가항목 (예시)	배점	참여연구원				
		A	B	C		
1. 참여도						
1) 세미나 및 회의참석	10					
2) 프로그램 수행	10					
참여도 점수 소계(최대 20점)						
2. 연구업적						
1) 국내KCI(1저자, 교신), 편당 4점						
2) 국내(1저자, 교신), 편당 2점						
3) 국내학술지 공동저자, 편당 1점						
4) 국내학술대회 발표, 2점						
5) 국내 특허 출원, 4점						
6) 해외SCI(1저자, 교신), 편당 8점						
7) 해외(1저자, 교신) 편당 4점						
8) 해외학술지 공동저자, 편당 2점						
9) 해외학술대회 발표, 4점						
10) 국제 특허 출원, 4점						
11) 수상실적, 1점						
*국내/국제 특허 등록, 4점 가산						
연구실적 점수 소계(최대 50점)	50					
3. 학업성취도						
100% - 96% (A0, 3.90): 15점						
95%-91% (A-, 3.50): 12점						
90%-86% (B0, 3.00): 9점						
85% 이하: 6점						
**각 과정 수료생: 6점						
학업성취도 점수 소계 (최대15점)	15					
4. 대외활동 및 과제 지원						
업무지원 및 관련 출장, 회당 5점						
대외활동 및 과제 지원 소계 (최대 15점)	15					
1-4번 점수 합계						

별표2.

참여교수 업적 평가표

평가항목 (예시)	배점	참여교수				
		A	B	C		
1. 참여도						
1) 세미나 및 회의참석	15					
2) 참여 대학원생 지도	15					
참여도 점수 소계 (최대 30점)						
2. 연구업적						
1) 국내KCI(1저자, 교신), 편당 4점						
2) 국내(1저자, 교신), 편당 2점						
3) 국내학술지 공동저자, 편당 1점						
4) 국내학술대회 발표, 2점						
5) 국내 특허 출원/등록, 4점						
6) 해외SCI(1저자, 교신), 편당 8점						
7) 해외(1저자, 교신) 편당 4점						
8) 해외학술지 공동저자, 편당 2점						
9) 해외학술대회 발표, 4점						
10) 국제 특허 출원/등록, 4점						
연구업적 점수 소계(최대 50점)	50					
3. 교재 개발 및 저서 업적						
교재 개발 및 저서 업적 (최대 10점)	10					
4. R&D 실적						
R&D 실적 (최대 10점)	10					
1-4번 점수 합계	100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참여교수별 평가점수의 합, 전체 평가점수 합은 100

※ 평가항목별 평가 근거 별첨

신진 연구인력 업적 평가표

평가항목 (예시)	배점	신진 연구인력				
		A	B	C		
1. 참여도						
1) 세미나 및 회의참석	10					
2) 프로그램 수행 (R&D)	10					
참여도 점수 소계(최대 20점)						
2. 연구업적						
1) 국내KCI(1저자, 교신), 편당 4점						
2) 국내(1저자, 교신), 편당 2점						
3) 국내학술지 공동저자, 편당 1점						
4) 국내학술대회 발표, 2점						
5) 국내 특허 출원, 4점						
6) 해외SCI(1저자, 교신), 편당 8점						
7) 해외(1저자, 교신) 편당 4점						
8) 해외학술지 공동저자, 편당 2점						
9) 해외학술대회 발표, 4점						
10) 국제 특허 출원, 4점						
11) 수상실적, 1점						
*국내/국제 특허 등록, 4점 가산						
연구실적 점수 소계(최대 50점)	50					
3. 교재 개발						
교재 개발 소계 (최대 10점)	10					
4. 대외 활동						
대외 활동 소계 (최대 10점)	10					
5. 대외활동 및 과제 지원						
업무지원 및 관련 출장, 회당 5점						
대외활동 및 과제 지원 소계 (최대 10점)	10					
1-4번 점수 합계						

※ 평가항목별 평가 근거 별첨